

원주시 수의계약 '철새업체' 배제

지역업체 보호책 강화 계약전 운영상태 점검

올해부터 원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에서 원주에 간판만 내건 소위 '철새 업체'가 전면 배제된다.

원주시는 올해부터 원주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물품을 생산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지역 경제와 연계하고 있는 업

체를 선별해 물품 구매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집중키로 하는 등 지역 업체 보호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이전에 해당 업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 각종 개발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외지에서 들어와 간판만 내건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철새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철새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산림사업, 차선 도색 등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도내 타 지역과 일정을 같이 해 발주하는 등 지자체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 부서마다 공사 등의 설계시 직접 구매해 공급이 가능한 품목은 최대한 관급자재로 반영해 지역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에서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 있음에도 외지 업체의 생산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원주/정태욱

황성 재정조기집행

올 상반기 1224억원

황성군은 올 상반기에 1224억원의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추진반, 집행지원반, 현지점검반, 총괄지원담당으로 구성된 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조기집행 추진단은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집행현황을 관리하고 사업조기추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원활하게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성/권재혁 kwonjh@kado.net

아하! 그렇구나

영업정지 기간 중 경미한 공사는 해도 되는 것일까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영업정지 기간 중이면 등록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해도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 내용 및 그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두12386 판결[건설업등록말소처분]).

결국 영업정지기간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 영업에 포함되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위반으로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영업정지기간 중 소액공사라도 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하나 이로 인하여 등록말소까지 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